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5. 31)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7월 17일
2016년 6월 17일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제4279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원”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교운영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학교운영위원이 학생의 졸업과 전학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다만, 학생”을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를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를 신설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의제4항 중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며, 회의 횟수는 연 4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를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부칙(2016. 6. 17. 조례 제42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1. 개정이유

- 가. 일부 정당인 및 선출직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의 직함을 얻고자 지역위원에 출마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 직함을 정치활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됨
- 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인원을 일부 제한하고, 지역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 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학교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선출 등” – 지역위원 정수 중 정당인 수 제한(제3조)
 -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과반을 넘기지 못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 나. “위원의 임기” –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종임(제4조)
 - 다양한 주민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 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제10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
- 라.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 학교 규정에 위임(제11조)
- 마.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제16조제1항)
 -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학교발전기금 등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